발행인 :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 편집인 : 기 획 홍 보 과 장 서울특별시중랑구 봉화산길 179번지

전 화 : 2094-0470~5



제1631호 2010. 4. 9

조 례

제889호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
제890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22
제891호	서울특별시중랑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7

※ 전부서 및 의뢰기관에게 알려드립니다.

- ♦ 중랑구보 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발행
- ⇒ 중랑구보 게재접수는 D-3일 18:00 까지 이며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

D-3일 접수 → D-2일 편집·교정 → D-1일 편집·교정 → D일 빛

- 🧼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조 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0년 4월 0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한편, 건물번호판의 교부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 "서울특별시중랑구 새주소 위원회"를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는 등 도로명주소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
- 나.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수수료는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수수료 징수는 구 수입증지로 함(안 제8조)
- 다.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9조)
- 라. "서울특별시중랑구 새주소위원회"를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함(안 제24조)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889호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장(제1조, 제2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 규칙"이라 한다), 「도로명 주소대장규칙」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과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삭제한다.

제3장의 제목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를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등" 으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한다.
 - ②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여 고시하되 제작비용의 산 정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 번호판의 조달단가(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비용으로 변경)를 기준으로 한다.
 - ③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구 수입증지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원인자부담)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 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세입·세출외 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 집행한다.

제4장과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를 삭제한다.

제11조의 제목 및 본문 중 "도로명사업"을 각각 "법"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도로명"을 "도로명주소"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의 "도로명 사업담당부서"를 "도로명주소담당부서"로 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삭제한다.

제6장과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

- 제15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설치하도록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훼손·망실된 도로명주소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 제16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 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공단
 -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도로명주소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 2. 계약기간 및 금액
 - 3. 도로명주소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 4. 도로명주소시설 일제조사 계획
 - 5. 도로명주소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 6. 도로명주소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제17조(도로명주소시설의 점검) ① 구청장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도로명주소시설이 훼손·망실되었거나 훼손·망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8조(수탁자의 지도·감독) 구청장은 수탁자가 도로명주소시설을 성실히 유지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7장의 제목 중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으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9조(광고의 범위) ① 구청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을 광고하지 않는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중 "안내표지판"을 "도로명주소안내표지판"으로 한다

제23조제1호 중 "새주소안내도 부착, 새주소안내표지판 설치 등 새주소 안내 시설 설치"를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로 한다.

제9장의 제목 "새주소위원회 등"을 "도로명주소위원회 등"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영 제26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중랑구 새주소위원회"를 "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주소위원회"로 "각 1인"을 "각 1명"으로 "5인이상 15인"을 "5명 이상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도로명사업"을 "도로명주소사업"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주소담당부서의 장이되다.

-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1. 회의일시 및 장소
-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 3. 토의 및 심의결과
-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표 1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u>조례</u>
제1장 총 칙	<u>제1장 총칙</u>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및 「도로명주
제3조(도로명의 변경 요건) 영 제7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명을 변경할 수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 제고를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후도로명 변경 신청일 현재 해당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법안단체의 대표자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로서 20세 이상의 자(이하 "주소사용자"라 한다. 이하 같다)의 5분의 1 이상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혅 颜

개 정 아

제4조(도로명의 변경)① 제3조제2호에 따라 <삭 제>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 변경 신청을 받은 날 또는 제3조제1호의 사유로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 이외의 자도 도로명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1. 해당 도로의 현행 명칭과 희망하는 명칭(복수안)
- 2. 해당 도로명의 변경 추진사유
- 3. 도로명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범위. 의견 제출의 방법 및 기간
-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 신청을 받거나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 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새주소위원회에 상정 · 심의하여야 한다.
- 1. 변경 신청된 도로명의 연혁, 제정 • 변경추진 사유
- 2. 변경 신청된 도로구간의 건물번호수 및 주소사용자 현황
- 3.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비용 및 조달방법
- 4. 도로명 변경에 대한 구민 및 구청장의 의견
-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혀 했

정 개 아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한 날로 <삭 제> 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과와 변경절차 (변경하기로 심의된 경우에 한한다) 등을 구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대표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3항의 심의결과가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해야 한다. 다만,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그 결과를 공고한 날로부터 31일 이후 40일 이내에 신청인의 대표자에게 통지 하고 구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다.

⑥제3조제2호의 경우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신청이 있고, 제3항의 심의결과가 도로명 변경 희망안의 1순위 도로명으로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5항에 규정된 주소사용자 2분의 1 이상에 대한 서면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⑦구청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로명 변경에 대한 동의를 얻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산자료를 정리하고,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변경된 도로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①구청장은	<삭 제	>				
영 제21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하고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고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21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미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고지 받은 사항에 대한 정정요청에						
관한 사항						
3. 해당 도로명을 부여한 사유						
4. 법적주소의 전환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u>하는 사항</u>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는 통장						
이나 고지업무종사원을 통하여 방문고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방문고지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실시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						

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 정 아 혀 했 제3장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제3장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등 |**제6조(건물번호판의 규격**) ① 영 제9조제5항에 | **<삭 제>**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의 그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로, 노(路)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 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20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1,000제곱 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며, 길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15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5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함 2. 건축물 등의 벽면에 글자(숫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붙이는 경우 에는 글자의 가로 · 세로의 길이가 각각 20센티미터 이상(숫자 "1"의 가로길이는 예외로 한다)으로 함 3. 옥외광고물에 건물번호판을 포함하여 제작하는 경우에는 표기된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외곽선을 연결한 폐다각형의

② 건물번호판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이상으로 함

내부면적이 제1호에서 정하는 규격

했 혀

아 개 정

제7조(건물번호판의 자체 제작・설치)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사항의 검토결과를 통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신청인이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도록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물번호판을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있는 위치에 운전자 •보행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설치완료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구청장은 법 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서울 제16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교부시기(신청일 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다.

<신 설기

<삭 제>

특별시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 · 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 (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건물번호판의 제작 비용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여 고시하되 제작비용의 산정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 번호판의 조달단가(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비용으로 변경)를 기준으로 한다.

<신 설기

③ 건물번호판의 제작 비용의 징수는 구 수입증지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 <u>신 설</u> >	제8조의2(원인자부담)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세입·세출외 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 집행한다.
제4장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u><삭 제></u>
제9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에게 사업시행을 승인하는 때에는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 준공예정일(건축물의 경우 임시사용・동별사용 승인을 포함한다) 90일 이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인가서 2. 사업계획도(축척 3,000분의 1 이상)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로명시설을 자체 제작 •설치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 하여야 한다.	

혀 했 개 정 아 1.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 <삭 제> 2. 사업지역에 설치할 도로명시설의 종류. 위치 및 수량 3. 도로명시설의 설치비용 • 기간 4. 도로명시설을 구청장이 설치하도록 할 경우의 비용 납부방법(법 제10조제2항 규정 관련)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자체 제<u>작·설치여부에</u> 대한 의견을 요청받은 시행자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도로명시설의 직접 설치여부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도로명시설의 설치 확인) ① 시행자가 <삭 제> 제9조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경우 에는 그 결과를 설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각종 개발 사업에 관한 준공 신청(건축물의 경우는 임시사용 • 동별사용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 제11조(법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의무) 구청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법에------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한 도로명의 ·······법에······ 도로구간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도로명 관련 자료의 제출) ① 중 랑구의 도로・건축물・국토이용계획・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도로명사업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로명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제13조(도로명기본도의 작성) 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작성·관리하는 도로명기본도에 배경자료(철도, 호수, 하천, 공원, 교량 등을 말한다)와 보조 자료(건축물군, 교차로, 지하철·철도역사, 관광지 등을 말한다)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도로명 등의 시스템에 반영) 구청장은 도로구간의 현황, 도로별 해당 도로명의 부여·변경사유 및 부여·변경일자 등을 중랑구도로명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한다.	<삭 제>
제6장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 제15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설치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훼손망실된 도로명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u>도로명주소시설을</u>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도 로명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공단 2. 최근 3년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관련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 <u>법에</u> 1. 「 <u>지방공기업법</u>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u>도로명시설을</u>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u>도로명시설</u> 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u>도로명시설의</u> 관리 및 정비계획 4. <u>도로명시설</u> 의 관리 및 정비계획 5. <u>도로명시설</u> 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u>도로명시설</u> 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 배상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사항	
	<u>도로명주소시설</u> ② ····· <u>도로명주소시설</u> ·····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수탁자의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18조 <u>(</u> 수탁자의 지도·감독) ·········
수탁자가 <u>도로명시설</u> 을 성실히 유지	······ <u>도로명주소시설</u> ······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7장 <u>도로명시설</u> 을 이용한 광고	제7장 도로명주소안내판 등
제19조(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 ① 구	제19조 <u>(광고의 범위)</u> ① ······
청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u>도로명</u>	
시설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 안내도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의 광고사업신청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	도안을 광고하지 않는 건물 등과 구분
일전에 구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u>야 한다.</u>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에	<u><삭제></u>
대한 광고계획	
2. 도로명주소안내도(종이와 전자매체를	<삭제>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 제작수량	
3. 안내표지판의 종류, 제작수량, 설치	<u><삭제></u>
<u>위치, 규격</u>	
4. 광고사업 참가자격	<u><삭제></u>
5. 광고사업 신청 장소, 기간, 제출서류	<u><삭제></u>
(제2항의 서류를 말한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u><삭제></u>
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광고사업을 수행하고자	② 구청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광고사업	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u>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의	<삭제>
<u>제작·구성계획</u>	
2. 자금조달계획 및 광고주 모집계획	<삭제>
3. 안내표지판의 규격, 재질, 디자인	<삭제>
등에 관한 설계도서	
4. 그 밖에 광고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삭제>
인정하는 사항	

현 행	개 정 안
③ 제2항에 따라 광고사업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광고사업신청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새주소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광고사업자를 심의한다. 1. 광고사업자의 수행 능력 2. 광고사업 수행의 실현 가능성 3.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구성의 적합성 4.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대한 기여도 등	<삭제>
④ 제3항에 따른 광고사업자 선정 평가 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하고, 배점부여기준은 서울특별시중랑구새주소 위원회에서 정한다.	<삭제>
⑤ 구청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에게 서울 특별시중랑구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고, 구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u><삭제></u>
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생략) ② 광고사업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광고주의 모집방법,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작・설치된 안내표지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안내표지판의 제작을 위한시안을 작성한 후 구청장과 협의・확정하여야 한다.	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현 행과 같음) ②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구청장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촉진을 위해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여야한다.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 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등 다중이용시설에 <u>새주소안내도 부착, 새주소안내표지판</u> 설치 등 새주소 안내시설 설치 2. ~ 4. (생략)	·····································
제9장 <u>새주소위원회</u> 등	제9장 <u>도로명주소위원회</u> 등
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26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중랑구 새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u>각 1인을</u> 포함한 <u>5인이상 15인</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생략) ③(생략) 1. 도로명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2.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3. ~ 4. (생략)	명주소위원회····································
제2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의 부여・변경(도로구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제29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1인씩 두며, 간사는 도로명사업담당부서의	간사는 도로명주소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0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1. ~ 2. (현행과 같음) 3. 토의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0년 4월 0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 제정이유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여 불법 광고물 정비·경관개선 및 간판시범거리 사업들을 실시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민들에게 제공하고, 도시미관을 향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기금의 재원 (안 제2조)

- 1)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중 중랑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나. 기금의 용도 (안 제3조)
- 1)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사업,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6조, 제7조)
 - 1) 구성: 12명 이내의 옥외광고 및 기금관련 전문가, 구의원, 공무원 등
 - 2) 기금운용계획, 기금결산보고,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심의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890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6.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 1. 광고물 등의 정비
 - 2. 경관개선
 -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 구좌로 관리한다.

- ② 기금은 중랑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금운용계획안
 - 2. 기금결산보고서안
 -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환경국장이 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기획홍보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재무과장, 건축과장, 교통행정과장
 - 2.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자
 - 3.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
 - 4. 그 밖에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의회의원 해당 임기 내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광

고물관리담당주사가 된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 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 1. 기금운용관 : 도시디자인과장
 - 2. 기금출납원 : 광고물관리담당주사
 -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기금결산의 개괄적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관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0년 4월 0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흡연자들의 금연실천과 청소년들의 흡연예방을 돕고 비흡연자들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 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권장구역 지정 및 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 존)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생활권 공원
 - -「학교보건법」제5조에 따른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 나. "금연우수시설"을 지정하여 금연 실천을 권장하고 우수한 시설 또는 기관을 선정하여 포상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 다. 민간단체 등의 금연교육실시를 지원하고 홍보함(안 제6조)
- 라. 금연관련 자원봉사자를 위촉하고 홍보활동을 지원함(안 제8조)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891호

서울특별시중랑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흡연자(이하 "흡연자"라 한다)들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돕고 비흡연자들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실천의 환경조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 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 2. "금연권장구역"이란 어린이·청소년 및 비흡연자들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정한 금연을 권장하는 구역을 말한다.
- 3. "금연우수시설"이란 자율적으로 금연을 실천하여 담배연기 없이 맑고 깨끗하게 관리되는 공중이용시설을 말한다.

제3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의 범위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중랑구 내에서 금연을 실천하기 위한 금연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다.

제4조(금연권장구역의 지정)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 1.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생활권 공원
- 3. 「학교보건법」제5조에 따른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 4. 버스·택시정류소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 5. 그 밖에 비흡연자의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6. 구청장은 올바른 금연문화 정착과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행 중 금연을 포함한 금연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연우수시설 지정 및 지원) 구청장은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과 시설 이용자의 흡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시설에 대해 업소 안에서의 금연실천을 권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업소를 "금연우수시설"로 지정하여 일정한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 1. 공중이용시설(사무용 건축물, 복합용도의 건축물, 공연장, 학원, 체육시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소 등)
- 2. 금연 우수시설을 선정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포상 할 수 있다.

제6조(금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들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공청회 등) 구청장은 주민의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하거나 학술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금연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로 위촉하고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